

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8 - 264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정이유

- 문화체육관광부의 ‘문화가 있는 날’, 경기도 ‘문화의 날’ 과 연계하여 ‘안산시 문화의 날’ 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,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등 (제1조~제2조)
- 기본계획, 문화시설의 이용료감면,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(제3조~제5조)
- 안산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(제6조~제7조)

자치법규안 : 붙임 1

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
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: 붙임 3

사전예고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9. 9.17. ~ 10. 7.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 4

- 방침결정문

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안산시 문화의 날) 이 조례에서 “안산시 문화의 날”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계획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라 한다)의 성별·연령·지역·계층 간 문화향유 정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
2.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를 평가 및 환류하여 마련한 개선 방안
3.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안산시 문화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.

③ 안산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의 소관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안산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·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
2.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
3.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
4. 안산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
5.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

제5조(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) 시장은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안산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공연법」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
2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
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4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

제6조(사무위탁) 시장은 안산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고,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관·과·소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관·과·소장 직위·성명	문화예술과장 김창섭
	담 당 직위·성명	문화종교팀장 안옥희
	담당자 성명(전화)	박미희 (481-2797)